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2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73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구합62373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3. 2.
판 결 선 고	2018. 3. 30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가 2015. 12. 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,799,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,190,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25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부분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"보고" 다음에 "2015. 12. 1."을, 2면 15행의 "고지하였다" 다음에 "(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)"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당사자의 주장

피고가 그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.

①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간주된 것이므로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데 위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면 그 세율이 '0'이 되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,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득세 자체가 면제된다(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).

② 이 사건 처분은 본세 및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예고 통지에도 위 필요적 기재사항을 여전히 누락하였으므로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(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).

③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간주취득세가 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25

제되는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(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).

나. 관계 법령

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다. 판단

1) ① 주장에 관한 판단

이 부분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 5면 8행 다음에 "라)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9두20816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."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) ② 주장에 관한 판단

가)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, 제55조 제1항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,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,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, 납세자의 주소·성명, 과세표준액, 세율, 세액, 납부기한, 납부장소,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,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25

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,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,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. 그리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,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,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.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,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,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,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(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36645 판결 참조).

나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3호증의 1, 2,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부과 근거법령, 세율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문에도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에서 누락된 부과 근거법령, 세율 등이 제대로 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4-25

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흠이 있고,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③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영

판사 신숙희

판사 이승철